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247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10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22.)로부터 3년 (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4.03.(금)	2026.05.19.(화)	2026.05.26.(화)	2026.05.29.(금)	2026.06.02.(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9.(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2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9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5.26.(화)	2026.05.29.(금)	2026.06.02.(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라클라체자이드파인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갤러리 1층(대치동))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4.22.)로부터 3년간(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1,499세대[조합원 868세대(보류지 24세대 포함), 임대 262세대] 중 일반분양 369세대 중 잔여 2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21	01	059.8054B	59B	1	104	302
	02	084.9634A	84A	1	103	601
	합 계			2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구분	금회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026.06.26.	2026.08.14.	2027.01.15.	2027.06.15.	2027.11.15.	2028.03.15.	2028.08.16.	
59B	104동 302호	1	924,443,881	1,123,156,119	-	2,047,600,000	50,000,000	154,760,000	204,760,000	204,760,000	204,760,000	204,760,000	204,760,000	204,760,000	614,280,000
84A	103동 601호	1	1,167,112,658	1,417,987,342	-	2,585,100,000	50,000,000	208,510,000	258,510,000	258,510,000	258,510,000	258,510,000	258,510,000	258,510,000	775,530,000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구조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는 59㎡A, 84㎡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타입은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타입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본 표기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5.10.10.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국민은행	956801-00-017357	노량진6주택재개발조합(외2개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국민은행 956801-00-017357, 예금주 : 노량진6주택재개발조합(외2개사))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기재,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Style Up, 개별 유상옵션, 추가 가전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 시	2026.08.14.	입주지정기간
59B	16,600,000	1,660,000	3,320,000	11,620,000
84A	19,500,000	1,950,000	3,900,000	13,650,000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구분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GS공구 : 103, 104동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국민은행	956801-00-017399	지에스건설(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4조,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타입별 설치 위치별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니 견본주택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분양)대금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세대별로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분양)대금과는 별도로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외부 발코니 새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세대가 비확장인 경우 추가 단열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 및 바닥에 단차가 생겨 실 사용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환기 등 관리 예방 실패로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께서 보수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함) 및 일부 벽체의 돌출, 인접 세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설치 위치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변경할 수 없으니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서 등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으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기본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 옵션 선택 시 내측(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의 마감 및 크기, 형태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에만 결로방지 단열재가 시공됩니다. (비확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마감 없음)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또는 인접 세대 대피용 경량칸막이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닌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 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 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Style Up 및 개별 유상옵션) 공급 대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B	84A
인테리어 Style Up	11,300,000	11,100,000
주방 Style Up	30,300,000	36,500,000
현관중문	3,400,000	3,400,000
욕실 특화 수전 및 위생도기 ACC, 샤워부스(무광)	4,700,000	4,700,000
원목마루	7,800,000	10,200,000
인덕션	1,800,000	1,800,000
복합환풍기	1,500,000	1,500,000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가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품목 및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품목, 구성 및 적용범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추가 선택품목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취소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스타일업(Style Up)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스타일업의 구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분리 판매 혹은 스타일업간 교차선택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시공 및 설치의 특성 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인테리어 Style Up, 주방 Style Up, 개별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GS공구 : 103, 104동	계약금	국민은행	956801-00-017386	지에스건설(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구분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입시기	계약 시	2026.08.14.	입주 시

- 본 아파트는 총 1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위의 각 동별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사업장으로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각 공구별로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구별 공급주체의 적용기준에 따라 연체료 등 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계좌와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는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품목, 적용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가전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LG전자 Premium UVnano 실내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	설치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B	2대	거실, 침실1	4,120,000	LG전자	-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7,290,000		-
84A	3대	거실, 주방, 침실1	5,970,000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9,37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냉매 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및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환기형공기청정시스템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59B, 84A	2대	선택1	거실, 주방	1,820,000	3,120,000	자이에스앤디(주) LG전자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선택 시 150CMH 전열교환기 적용
	2대	선택2	거실, 침실1	1,820,000	3,120,000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60,000	3,960,000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340,000	5,640,000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설치를 위해 일정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제품은 제조사 및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 시 모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으로 동등 이상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G프리미엄 환기(전열교환기)는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과 환기 연동 전용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LG프리미엄 환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공급금액은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LG프리미엄 환기 미선택 시 기본 제공 전열교환기가 시공됩니다.

■ 주방가전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LG전자	드로워 포함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가구 부착형(14인용)
오브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M62BAAA332+Z334AAA151	6,200,000		냉장. 냉동+김치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주방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GS공구 : 103, 104동	계약금	신한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중도금, 잔금			
구분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입시기	계약 시	2026.08.14.	입주 시	

- 본 아파트는 총 1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위의 각 동별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사업장으로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각 공구별로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구별 공급주체의 적용기준에 따라 연체료 등 산정기준이 상이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주방가전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추가 가전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및 LG프리미엄 전열교환기, 주방가전]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 상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업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29.(금) ~ 2026.06.07.(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2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일시 : 2026.06.02.(화) 10:00 ~ 17:00
-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9.(화))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라클라체자이드파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함
	○		인지세 납부 (정부수입인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발코니 확장계약 별도)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1/2)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예비순번 순서대로 별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205호(상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법인등록번호	115071-0005136	110111-0002694	110111-0038805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lxd>)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갤러리 1층(대치동)

■ 분양 문의 : 1833-2478